

## 2021년도 KOICA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 전략형파트너십사업 공모 설명회 질의응답

2021.01.25(월)

번호	질의내역	답변내역
1	마다가스카르가 중점협력국가에 포함될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결과 3기 중점협력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참고 :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2	사업분야 관련하여, KOICA CP의 여러 분야를 연계하여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지? 예를들어 를 연계하여 설계하는 등 2가지 이상의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분야와 CP/P의 프로그램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사업의 취지, 목표 달성 가능성을 고려할때 2개 이상의 CP/P를 아우르는 것은 동 사업이 지향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1개의 타깃 CP/P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달성을 위해 여러 분야의 연계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활동구성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신청자격 : 수행기간 5년 조건 관련 누적 또는 연속 인지 문의드립니다.	누적 5년입니다.
4	단체 자격에서 코이카 사업 경험(2개 사업 이상, 5년 이상)이 현지 파트너도 해당되는 건가요?	단체자격은 제안기관(컨소시엄시 모두)에만 해당하는 요건입니다.
5	CSO 참여자격에서 코이카사업 5년 이상의 사업경험(사업 2개 이상)이 현지 파트너도 해당이되는 건가요?	단체자격은 제안기관(컨소시엄시 모두)에만 해당하는 요건입니다.
6	17년도부터 KOICA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올해 5년차인데 그렇다면 기관 선정 기준(5년 이상 사업 수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일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 수행기간 요건 미충족입니다.
7	본 사업으로인한 KOICA 분담금이 단체의 직전 3년 평균 수입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 여기서 이야기하는 본 사업으로인한 KOICA분담금은 5년의 평균인가요 아니면 5년의 총 합인가요?	연간 KOICA 분담금 편성 금액입니다.
8	전략형 사업의 경우 대상국 파트너가 반드시 국내기관 NGO로 등록이 되어야만 신청 가능하나요? 아니면 현지에 등록되어 있는 NGO혹은 대학과의 MOU로 제안할 수 있나요?	제안기관, 컨소시엄 파트너(해당 시)는 모두 국내 등록된 기관으로 동 사업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국 현지 파트너십의 경우 현지 등록기관도 가능하며 MOU로 파트너십 증빙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지 파트너십은 동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요건이나 현지 파트너가 KOICA와의 약정 주체는 아닙니다.
9	매칭비율을 7:3로 할 경우 심사에서 가점 적용 받나요?	기관의 자원분담 초과분담 비율은 2차 심사 정량평가에 반영됩니다. - 파트너기관의 자원분담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1점 - 정해진 비율보다 10% 이상인 경우 2점
10	대응자금을 기존 민관협력사업과 같이 상당 부분 참여인력 인건비로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현물 비중의 적절성, 금액 산정의 적절성 등이 심사됩니다.
11	협력국 정부나 지역사회의 기여 토지도 자부담 선정 가능한것인지?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가 제안하는 사업 수행 목적에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어야 하며, 외부 감정사(감정평가사)에게 적정하게 평가받은 결과(금액 산정)가 있어야 합니다. 토지의 분담시 파트너분담금 전체 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12	두기관의 컨소시엄일 경우 코피스등록은 어떻게 되는지요	2개 기관 컨소시엄이 1개의 조직처럼 운영됩니다. KOICA와의 약정 상대방으로 'AAA, BBB 컨소시엄' 으로 명명합니다.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되는 기관은 모두 KOPIS에 가입해야 하며, 양 기관 중 1개 기관이 대표로 제안서를 등록하되, 제안서 작성 시 '기관정보'에 컨소시엄 기관을 모두 입력하고, 대표기관은 '대표업체'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13	사업책임자나 핵심투입인력(국내)의 해외파견이 필수인가요?	핵심투입인력은 분부, 현지 각 1인 편성 필수입니다. 핵심투입인력이 반드시 한국인일 것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14	한 단체에서 예비제안서 2개 제출하면 제안서가 좋은면 2개 다 통과되나요? 아니면 2개 중 1개만 선정이 되나요?	제안 가능 건수는 2개이며 기관별 선정 건수는 1개 제한입니다. 따라서 최대 1개 선정됩니다.
15	전략형사업경우는 진입형과 주제별처럼 제안 사업수 제안에 제한 적용을 받는지요?	기관별 2개까지 제안 가능하십니다.
16	이번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에 선정된다면 6월에 진행되는 공모사업에 1개 사업만 제안 가능하다는 말씀일까요?	전략형파트너십사업 선정기관은 주제별파트너십사업 공모에 1개만 제안 가능하십니다.
17	예비 제안서 상 기재된 활동 항목별 예산액/비중에 대해, 세부제안서 단계에서 어느정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심사상 불이익 없는지 여쭙니다.	심사과정을 통해 심사의견을 반영, 사업제안서와 예산서는 지속 수정가능합니다. 심사의견의 반영 및 타당한 근거/사유에 의한 수정은 심사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18	예비제안서 내용과 사업 제안서(2차 심사) 내용이 상이하면 감점요인이 되나요? 예를 들면, 현지 상황으로 인해 예비제안서 상 PDM과 사업 제안서 상 PDM이 달라진다면 감점요인이 되나요?	심사과정을 통해 심사의견을 반영, 사업제안서와 예산서는 지속 수정가능합니다. 심사의견의 반영 및 타당한 근거/사유에 의한 수정은 심사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19	단체 소개서 7번 항목의 제출 서류 에 있어서 (용역 또는 파트너십사업) 사업실적증명서의 경우, KOICA와 협력한 사업에 대해서도 제출이 필요한 것인가요? 그리고 사업 실적 관련, 2017~2019, 3년간 사업의 경우 2017, 2018, 2019 각각 사업 실적으로 정리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KOICA와 협력한 사업 중 시민사회협력실(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 실적증명 제출이 불요합니다. 실적증명서에 계속사업(17~19) 수행 내역이 기재된 경우 1개의 실적증명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20	① 선정 사업이 5개 내외로 많지 않을텐데, 수요조사가 나온 국가는 9개이므로 수요조사가 제출된 국가들이 유리한 것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심사표에서는 사무소의 의견 반영여부가 보이지 않는데, 사무소의 수요/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요? ② 현지 핵심 투입인력이 미정인 경우, 지정예정/채용예정 등으로 표기 가능한가요? 지정 가능한 현지 인력이 있다면, 면접은 온라인으로 필수 참석해야 하나요?	① 사무소의 수요 의견 반영 여부가 심사에 자동적으로 접수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수요, 전략적 부합성, 사업 중복성 여부, 시너지 효과 등이 사업제안서를 통해 입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소 수요, 컨설팅 의견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결과가 공유된 국가 외에도 중점협력국 및 KOICA CP 수립국은 제안 가능하며, 수요결과가 공유된 9개국의 경우 제시된 CP/P 외의 Program(CP/P)으로도 제안 가능합니다. ② 사업책임자와 핵심투입인력은 사업기획단계부터 주요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인력으로 사업책임자와 핵심투입인력 총 3인은 사업 제안 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며 면접 시 필수 참여 대상입니다. 따라서 핵심투입인력이 채용 예정인 경우 관련 심사(투입인력 역량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	유무형자산 등은 현지 이양 필수 인가요? 최대 15년동안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이양을 위한 기간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사업 최종 종료 후 이양을 기본으로 합니다. 장기간 수행되는 사업임에 따라 사업기간 외 이양을 위한 별도 기간은 없으며 사업기간 내 관련사항에 대한 방안 마련 및 실행이 요구됩니다.

22	<p>① 각 심사 차수별 선발 사업수(각각 몇배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p> <p>② 1차(3월) 심사 때 각 단체별(2개 제출한 경우) 1개 사업만 선정되는게 맞는지요?</p> <p>③ 외부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심사를 위한 위원 구성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p> <p>④ 성과관리 인력/조직도 부분은 현지 사무소 내 조직으로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국내(한국 국적) 인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p> <p>⑤ 현지와 국내 회계법인 계약은, 기관 내부 입찰과 계약 등 내규만 준용하면 되는 것 인가요?</p> <p>⑥ 인건비의 경우 급여명세서나 고용계약서 필수 제출이라고 하였는데, 아직 사업 선정 전이기 때문에 (한국인) 파견 인력의 경우, 채용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서류로 대체가 가능할까요?</p> <p>⑦ 예비 제안서 포함한 제안서와 예산서 영문 양식도 있을까요?</p>	<p>① 각 심사차수별 선정기준(총점의 80% 이상) 충족시 모두 다음차수 심사 대상이 됩니다.</p> <p>② 1개 기관이 2개 사업을 제안한 경우 1차 심사 시 1개 사업만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 됩니다.</p> <p>③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됩니다.</p> <p>④ 제안기관의 조직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제안기관(한국)에 관련 조직 부재 시 현지 사무소 조직내 성과관리 조직이 있는 경우 참고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p> <p>⑤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선정하시면 됩니다.</p> <p>⑥ 채용 예정인 직급과 예산계획에 따른 집행 금액을 계상하여 제출하시게 됩니다. (현 물재원 가정 시) 실제 채용한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과소하여 파트너분담금이 부담되는 경우 제재부과 및 약정해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p> <p>⑦ 사업 제안관련 모든 자료는 영문개요서 제외, 국문제출을 기본으로 하며 별도 영문 양식은 없습니다.</p>
23	<p>① (외부 성과관리 비용) 3~5% 편성이 필수인데, 최대 예산을 고려하였을 때 예산 규모로 인해 성과관리 파트너를 입찰 과정을 통해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예비 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당시 파트너 기관을 확정해서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선정 계획 수준으로 작성해도 되는 것일지 확인 부탁드립니다.</p> <p>② (회계정산) 외부 회계법인 예산 편성 비율 기준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p> <p>③ (재무 및 회계/감사보고 원본 제출 필요 여부) 제출을 위한 별도의 양식이 없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재무 및 회계 관련 원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필수 정보만 포함해서 작성하여 보내면 되는지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p> <p>④ (예비 제안서 작성 대비 세부 예산서 작성 변동 가능 여부) 예비 제안서 작성 시 예산/비중 기재한 내용에서 세부 예산서 작성 시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수용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p>	<p>① 외부 전문 성과관리팀의 선정은 사업 선정 후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서에는 성과관리팀 운영계획, 성과 환류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외부 전문 성과관리팀과 별도로 제안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 지정은 예비제안서 내 성과관리 부분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p> <p>② 편성 비율 없습니다.</p> <p>③ 원본 제출 불요, 대외 공개 혹은 국세청 공시에 제출한 내역 제출 가능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자료요청 할 수 있습니다.</p> <p>④ 심사과정을 통해 심사의견을 반영, 사업제안서와 예산서는 지속 수정가능합니다. 심사의견의 반영 및 타당한 근거/사유에 의한 수정은 심사상 불이익이 없습니다.</p>
24	<p>(사업제안서 동 사업을 통해 지원가능한 범위)</p> <p>① 인건비 지원 가능 인력의 수</p> <p>② 파견비 지원이 가능한 인력의 수</p> <p>- 동 사업의 경우 핵심인력이 3명으로 전 인원의 파견시 지원 가능여부 확인코자 함</p> <p>③ INGO 현지 사무소의 운영 및 행정비 지원의 범위 (혹은 규모)</p> <p>(제출양식)</p> <p>④ 전략형 파트너십 단체소개서, 사업예비제안서(예산서 포함) 양식 공유 여부</p>	<p>① 별도 제한 없습니다.</p> <p>② 별도 제한 없습니다. 다만 핵심인력은 본부, 현지 각 1인 지정 필수임에 따라 전 인원 파견은 가능하지 않습니다.</p> <p>③ 현장운영비 내 편성가능한 항목은 '일반관리비'로만 집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사업비로 편성가능하며, 현장운영비 내 편성 세목이 없는 경우 일반관리비 2.5%내 국내/외를 포괄하여 편성하셔야 합니다.</p> <p>④ 양식 공유 예정입니다.</p>